

제291회 시의회 임시회  
기획경제위원회  
2020. 02. 27.(목)

I·SEOUL·U  
너와 나의 서울

세계 최고의 소기업·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

# 정 관 변 경 보 고

# 정관 변경 보고

## I. 변경이유

- 관악구-재단 협약체결에 따른 '관악구 상권르네상스사업'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
  - 재단 업무 내용에 '상권활성화 사업' 추가
  - '상권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'의 근거 규정 마련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

제7조의4(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) ② 법 제19조의8 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- 市 「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」 (공기업담당관-2019.11.06.)에 따라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정관에 기본재산(출연금) 목록 기재 의무화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
## II. 주요내용

### 1 관악구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련 업무 신설 [제22조, 제27조의3]

- 재단의 ‘관악구 상권르네상스사업’ 상권관리기구 참가에 따라 정관 상 업무 내용 추가하여 업무범위 명확화 (제22조)
  - (신설)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사업
- 상권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한 ‘상권활성화 협의회’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(제27조의3)
  - (신설) 상권활성화 협의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도록 명시

### 2 기본재산 목록 기재 [별지]

- 재단 기본재산 목록 ‘별지’ 신설
  - 회계법인 감사 및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‘2019년 결산재무제표’ 상 기본재산 목록 기재

※ ‘재무상태표’ 주석13(기본재산)

- 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의 서울특별시 출연금과 재단 설립 후 서울특별시 및 국내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

<별지>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출연기관	금액(2019.12.31.기준)
설립시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
출연금	서울특별시	333,515,466
	대한민국정부	118,135,008
	자치구	13,150,000
	금융회사 등	527,157,705
	소 계	991,958,179
합 계		1,041,958,179

Ⅲ. 시행일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는 날

【붙임】 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## 정관 변경 전 · 후 대비표

현 행	변 경(안)
<b>정 관</b>	<b>정 관</b>
<b>제1장 총 칙</b> 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	} (현행과 같음)
<b>제2장 임 원</b> 제7조~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	
<b>제3장 이사회</b> 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	
<b>제4장 업 무</b>	<b>제4장 업 무</b>
<b>제22조(업무)</b>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 1. 기본재산의 관리 2. 신용보증 3.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4. 경영지도 5. 구상권의 행사 6. 정책자금 융자대상업체 평가 7.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8. 제1호,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9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	<b>제22조(업무)</b>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 1. 기본재산의 관리 2. 신용보증 3.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4. 경영지도 5. 구상권의 행사 6. 정책자금 융자대상업체 평가 7.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8. 제1호,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9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

현 행	변 경(안)
<p>업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0.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</p> <p>제23조~제27조의2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회 계</p> <p>제28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해 산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17) (기재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업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</p> <p><b>10.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사업</b></p> <p><b>11.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27조의3(상권활성화 협의회) 재단은 제22조 제10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8)</p> <p>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별지 (별도첨부)</p>

[별지] 기본재산 목록 <신설 2020.00.00.>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출연기관	금액(2019.12.31.기준)
설립시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
출연금	서울특별시	333,515,466
	대한민국정부	118,135,008
	자치구	13,150,000
	금융회사 등	527,157,705
	소 계	991,958,179
합 계		1,041,958,179